

사업이행확약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받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용자받은 후 용자금은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2. 용자받은 후 본업소를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3.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4. 모범음식점으로 용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5. 대출당시 관할구청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다만,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귀청에 사전 신고 및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6. 용자받은 육성자금(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등 도박행위, 경조사·여행비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7. 영업장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후 사업완료신고서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또는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귀청에 제출하겠습니다.
8. 시설개선공사 전 용자금을 교부한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지체 시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9. 사업수행 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회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후 사진(완료일:)

(업 소 전 경)

(개 선 완 료 시 설)